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2020년 10월 15일인 경우,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
- (신청접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 홈페이지 내 '평가지정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 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함

4. 평가·지정 절차 및 방법

○ (평가·지정 절차)



- (컨설팅) 신청의료기관 평가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평가준비 지원을 위해 희망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 제공
 - (사전 컨설팅) 효율적인 평가준비 및 마비점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가이드 제공
 - (모의평가) 현지조사 전 의료기관의 평가 준비 정도의 최종 점검을 위해 실제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의평가 시행
 - ※ 본 평가(현지조사)와 별도로 ‘사전 컨설팅’ 또는 ‘모의평가’ 상시 신청 가능
- (현지조사) 본 평가로써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09:00~18:00) 기준으로 1.5일 소요

구 분	평가위원 수	조사일수	평가 비용
병원급	2인	1.5일	570,000원
의원급			1,140,000원

- * 평가위원 2인외 조사보조원(유치국가언어별 전문가) 2인 동행
- 현지조사 일정은 접수신청 후 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수요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월별 조사기관 수 제한으로 조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로 나누어 평가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조사항목 >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환자안전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4. 환자안전보장활동
2. 전문의 보유	5. 환자진료
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6. 의약품관리
	7. 감염관리
	8. 시설 및 환경관리

- (병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 의료법에 따른 인증효력 유지 전제
- (의원급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두 부문 조사항목 모두 조사

5. 지정기준

- (판정기준) 아래 표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시

판정	① 필수항목	항목(ME) 평균 점수			비 고
		② 전체	③ 장별	④ 기준별	
지정기준 충족	무 또는 하 없음	8점 이상	7점 이상	5점 이상	①~④번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조사항목별 점수산정) '상/유' 10점, '중' 5점, '하/무' 0점

6. 지정 및 결과통보

- (지정) 현지조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통보
 - 신청기관은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음
- (지정심의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
 - 위원회 심의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전월 말일까지 현지조사가 완료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
 - ※ 평가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심의일 별도 안내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필요
- (결과통보) 지정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지정기관 발표
 - (이의신청)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신청
 - (지정서 수여) 지정기관 발표 이후 20일 이내 지정서 수여

- (지정 취소) 지정 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효력 상실
 -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및 제25조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지정기관 지원사항

- (국내외 홍보지원) 국내외 홍보회 참가 지원,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 홍보, 지정기관 촬영 및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20년~)
 - * ('19.11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주요 5개 지하철역에 키오스크 운영
- (전문인력 고용기반 조성) 유치 의료기관의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E7비자 대상) 고용인력 기준 완화(2명 → 3~4명, '19.9월~)
 - * 기관당 3명, 유치실적 연간 1,000명 이상 시 추가 1명 고용 가능
- (운영자금 용자지원) 지정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용자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20.1월~)
- (전자비자 발급)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평가(법무부) 시, 2020년부터 지정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가점 부여 확정('20.9월 공고 예정)
 - * 의료관광 초청 또는 진료 실적이 우수하고 불법 체류율이 낮은 유치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전자사증 신청,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포상지원) 국내외 표창 후보자 참여 지원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 지정제도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정기관의 지원을 확대 추진 중에 있음

8.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www.medicalkorea.or.kr> 홈페이지 평가지정 신청 참조
- 제도 및 신청 문의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02-2076-0692, hskang@koiha.or.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043-713-8145, hr5696@khidi.or.kr)